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기숙사를 각각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기숙사를 통합 개발·공급하여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심주택” 공급체제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각 사업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주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대상지 및 사업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및 도시관계획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및 운영자문위원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으로 기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